

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조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발의연월일 :

발 의 자 : 최 미 애

1. 조례제정의 목적

- 1) 저출산 고령사회가 다가오면서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, 미래 세대의 인적자원인 빈곤 아동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뿐 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.
- 2) 빈곤, 방임 아동에 대한 양질의 방과 후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족한 교육의 수요를 충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.
- 3) 미래세대 국가의 중요한 인적자원인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충청북도 차원의 예산 수립 및 확충이 필요하다.

2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1) 지역사회 학교를 비롯한 지역아동센터, 방과 후 관련 시설에서 보편적이면서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.
- 2) 주민참여에 기초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이 반영된 조례제정 과정은 지역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 개선, 교육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 조성, 나아가 지역공동체 구성 및 발전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.
- 3) 법적 여건 미비 등으로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어려운 빈곤지역 지역아동센터·공부방 등에 충청북도의 조례에 근거하여 안정적인 사회적 지원망을 통한 교육기회에 대한 불평등 해소와 빈곤의 대물림 현상 완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.

3. 조례제정 제안 내용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보육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아동복지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책임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지사”라 한다)는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.

제3조(정의) ① “지역아동센터”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16조 11항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, 교육,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,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.

② “아동”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의 정의에 따른다.

③ “지역아동센터 종사자”라 함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, 교육, 양육, 치료,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④ “사업”이라 함은 지역아동센터의 설립 과정 및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.

제4조(사업의 실행 주체)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,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,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보육 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행할 수 있다.

제5조(사업의 대상) 이 사업은 충청북도 관내 취학 아동 가운데 부모의 취업 또는 경제적 사정 및 기타 사유, 그리고 아동 자신의 장애로 인하여 학령기 아동이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거나 부모가 방과후 보육을 원하고 있는 초·중학교 재학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. 단, 경우에 따라 미취학 아동이나 중퇴아동도 이 사업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.

제6조(지역아동센터의 우선 설치) 도지사는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, 농촌지역, 공단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, 종교시설, 및 기타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.

제7조(사업)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,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한다.

- ①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.
- ②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.
- ③ 아동의 정서지원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.
- ④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.
- ⑤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지원 사업.
- ⑥ 기타 도지사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.

제8조(사업비의 지원) 도지사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- ① 지역아동센터 사업비.

- ②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.
- ③ 지역아동센터 시설과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.
- ④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.
- 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비.
- ⑥ 지역아동센터 법정공휴일 운영비.
- ⑦ 지역아동센터 야간운영 지원비.

제9조(사업비의 지원 대상) 도지사는 지역아동센터 중 국고보조금 심사를 통하여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센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) 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1.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 - 2. 아동의 복지 교육 보전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.
 - 3.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.
 - 4. 아동의 복지, 교육, 보전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.
 - 5. 지역아동센터의 장 및 시·도 연합회, 협의회 대표 3인 이내.
 - 6.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.
 - 7. 교육청 관계자.
 - 8. 충청북도 도의회 의원 1인.
-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하고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- ⑤ 위원회에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원 1인 이상을 두거나 담당 공무원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.

제11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- ①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, 해당 중앙부처의 시행계획에 따른 충청북도의 시행계획.
- ②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 평가.
- ③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행·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마련.
- ④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·관 협력방안 마련.
- ⑤ 지역 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충청북도가 부의하는 안건.
- ⑥ 지역아동센터 교육지원 및 프로그램, 사업지원.
- ⑦ 정보망 관리를 통한 강사, 자원봉사자 파견.

- ⑧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·보호자의 욕구조사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.
- ⑨ 기타 지역아동센터의 업무 효율을 위한 대안 마련 및 지원 사업.
- ⑩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

제12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상.하반기 개최한다.

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, 민간 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, 자료제출,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3조(해임.해촉)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.

①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.

②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.

③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.

④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.

⑤ 기타 사정으로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.

제14조(위원회의 수당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되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